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



[시행 2025. 5. 20.] [대통령령 제35517호, 2025. 5. 20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 (경제조직과) 044-205-2351 금융위원회 (행정인사과) 02-2100-2752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소속기관)「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 원을 둔다.

제2장 금융위원회

- **제3조(직무)** 금융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,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- 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,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보한다.<개정 2019. 3. 26.>
- **제5조(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)** ①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.
 -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,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19. 3. 26.>
- 제6조(사무처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.
 -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,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 -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・감독 한다.
- **제7조(하부조직)** ① 사무처에 행정인사과・금융소비자국・금융정책국・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국을 둔다. <개정 2009. 5. 6., 2013. 9. 17., 2018. 7. 24., 2022. 12. 27.>
 -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.<개정 2009. 5. 6.>
- 제8조(대변인)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08. 10. 8.>
 -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.<개정 2010. 7. 9., 2011. 10. 10.>
 - 1.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
 - 2.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
 - 3.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
 - 4.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
 - 5. 온라인대변인 지정 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점검 및 평가

제9조 삭제 <2009. 5. 6.>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10조(기획조정관)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-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.<개정 2010. 7. 9., 2011. 12. 30., 2013. 3. 23., 2013. 9. 17., 2017. 7. 26., 2019. 4. 30.>
- 1.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
- 2. 위원회의 예산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금융감독원의 예산 결산 승인 등 관련 주요업무 총괄
- 3.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
- 3의2.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·선정, 추진상황 확인·점검 및 관리
- 4. 금융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
- 5.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
- 6.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
- 7. 위원회,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및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등에 관한 사항
- 8.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 관리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사무의 총괄
- 9. 민원(국민제안을 포함한다)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
- 10.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・처리
- 11.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・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및 보안・방호업무의 총괄・조정
- 12. 재산등록, 취업 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
- 13. 비상대비 관련 업무 및 직장예비군 직장민방위대의 관리
- 14. 안전관리・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・운영
- 15.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・감독에 관한 사항

제11조(행정인사과) ① 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. <개정 2009. 5. 6.>

-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0. 7. 9., 2021. 1. 5.>
- 1. 보안 및 관인 관인대장의 관리
- 2. 소속 공무원의 임용, 복무, 연금, 급여,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
- 3.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
- 4.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시행 결과의 평가
- 5.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・접수・발송・보존・이관 등 기록관 운영
- 6.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
- 7. 삭제 < 2019. 4. 30.>
- 8.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
- 9. 국유재산 물품의 관리 및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
- 10. 업무처리절차의 개선,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
- 11.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제11조의2 삭제 <2022. 12. 27.>

제11조의3(금융소비자국) ① 금융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둔다. <개정 2022. 12. 27.>

-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20. 7. 28., 2022. 12. 27.>
-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1. 9. 7., 2022. 12. 27.>
- 1.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・총괄
- 2. 금융소비자 정보제공・불편해소 및 피해예방
- 3.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
- 4.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
- 5. 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5의2.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
- 6. 휴면예금·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- 7. 금융채무 불이행자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
- 8.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・총괄
- 9.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
- 10.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 감독
- 11. 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조정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·감독
- 12. 사금융(私金融)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
- 13. 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관리
- 14. 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・감독에 관한 사항
- ④ 삭제<2020. 7. 28.>

[본조신설 2018. 7. 24.]

- **제12조(금융정책국)**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, 국장 밑에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(이하 "정책관등"이라 한다) 1명을 둔다. <개정 2014. 8. 12., 2020. 7. 28., 2024. 6. 25.>
 -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14. 8. 12., 2020. 7. 28.>
 -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0. 7. 9., 2012. 8. 3., 2014. 8. 12., 2014. 12. 30., 2016. 5. 31., 2017. 7. 26., 2018. 7. 24.>
 - 1.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・총괄
 - 2. 기획재정부,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
 - 3. 금융감독・검사・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・총괄
 - 4.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・협의
 - 5.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
 - 6. 삭제 < 2014. 8. 12.>
 - 7.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
 - 7의2. 녹색금융 및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
 - 8. 삭제 < 2018. 7. 24.>
 - 8의2.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
 - 9.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・총괄
 - 10. 국내외 금융시장・부동산금융의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
 - 11.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
 - 12. 국제기구와의 거시금융정책 협의
 - 13.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・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
 - 14.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사항
 - 15. 국책은행 민영화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
 - 16.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,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
 - 17. 중소기업금융 등 기업자금 정책의 기획・조정・총괄 및 기업자금 사정의 점검・분석
 - 18.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
 - 19. 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 허가의 총괄 조정

20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[제36호로 이동 <2014. 8. 12.> 21. [제40호로 이동 <2014. 8. 12.>

- 22. 삭제 < 2011. 12. 30.>
- 23. 금융의 개방・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
- 24. 금융서비스의 양자 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
- 25. 외국 금융당국 · 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
- 26. 금융기관 해외 직접투자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
- 27.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업무
- 28.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·조정 및 총괄
- 29.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 및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립ㆍ운영
- 30.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ㆍ조정
- 31.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의 지원
- 32.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 · 집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33. 기업의 신용위험분석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
- 34. 기업부실위험에 대한 조기대응에 관한 사항
- 35. 주채무계열 및 주채권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- 36.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
- 37. 「공적자금관리 특별법」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
- 38. 「공적자금상환기금법」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관한 사항
- 39.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
- 40. 예금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
- 41.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- 42. 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7호, 제7호의2, 제8호, 제8호의2, 제9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- ④ 삭제<2020. 7. 28.>

제13조(금융산업국) ① 금융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,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. <개정 2018. 7. 24., 2024. 6. 25.>

-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09. 5. 6., 2011. 12. 30., 2018. 7. 24., 2024. 6. 25.>
-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0. 7. 9., 2011. 12. 30., 2016. 9. 22., 2018. 7. 24., 2024. 6. 25.>
- 1. 은행업·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, 인가·허가,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
- 2. 은행산업·보험업의 국제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
- 3.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
- 4.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
- 5.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
- 6. 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감독업무의 총괄ㆍ조정
- 7.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
- 8. 공영보험 · 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9. 보험업협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
- 10. 상호저축은행업・여신전문금융업・상호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, 인가・허가,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
- 11. 상호저축은행중앙회・신용협동조합중앙회・여신전문금융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
- 12.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
- 13.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 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
- 14.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
- 15.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
- 16. 전자금융거래・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・등록・감독
- 17.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
- 18.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
- 19.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의 수립 · 총괄
- 20. 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, 채권추심업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인가・허가・등록・감독 및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・감독
- 21. 금융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
- 22.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・감독에 관한 사항
- ④ 삭제 < 2018. 7. 24.>

[제목개정 2018. 7. 24.]

제13조의2(자본시장국) ①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.

-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-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- 1.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
- 2. 금융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금융투자업자·금융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대한 인가·허가·구조조정·감 독
- 3.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대한 관리ㆍ감독
- 4.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・유통에 대한 관리・감독
- 5.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
- 6. 기업공개·상장제도에 관한 사항
- 7. 한국거래소・한국예탁결제원・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대한 관리・감독
- 8. 집합투자업・신탁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・신탁업자에 대한 인가・허가・구조조정・감독
- 9. 퇴직연금 등 연금에 대한 관리 ㆍ 감독
- 10.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,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
- 11. 증권 등의 공시제도 운영 및 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
- 12. 회계기준, 외부감사기준의 제ㆍ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
- 13. 증권 파생상품에 대한 조사,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
- 14.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·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15.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
- 16. 허위의 공시자료, 중요사실의 누락,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
- 17.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・감독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22. 12. 27.]

제14조(위임규정) ①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 7. 28.>

②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0. 7. 28.>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3장 금융정보분석원

- 제15조(직무) 금융정보분석원은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및「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0. 7. 9.>
 - 1.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의 기획 및 지침의 수립・운영
 - 2.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
 - 3.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・훈련의 지원
 - 4.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・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
 - 5.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(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)
 - 6.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
 - 7.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
 - 8.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
 - 9.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의 기록 보존
 - 10.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
 - 11. 자금세탁행위 등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・연구
 - 12.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관리

제16조(원장)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둔다.

-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- ③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대표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7조(하부조직)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공무원의 정원

- **제18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** ① 위원회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 조직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30., 2018. 3. 30., 2020. 7. 28., 2023. 8. 30.>
 -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24명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<개정 2014. 8. 12., 2018. 7. 24., 2021. 9. 7., 2022. 12. 27., 2024. 6. 25.> ③ 삭제<2009. 5. 6.>
- **제19조(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**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3. 30., 2020. 7. 28., 2023. 8. 30.>
 -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검사의 정원은 4명(「검사정원법」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받아 보직하는 검사를 말한다)을, 총경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)은 3명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.<개정 2014. 8. 12.>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삭제<2009. 5. 6.>
-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(5급 3명, 6급 1명, 7급 1명)은 법무부, 2명(5급 2명)은 행정안전부, 10명(4급 1명, 5급 2명, 6급 5명, 7급 2명)은 국세청, 9명(4급 1명, 5급 3명, 6급 4명, 7급 1명)은 관세청, 8명(총경 1명, 경정 4명, 경감 3명)은 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11, 12, 30, 2014, 2, 17, 2021, 9, 17.>
- **제20조(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)** 위원장이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. 6., 2023. 8. 30.>

[전문개정 2013. 12. 11.] [제목개정 2023. 8. 30.]

- 제20조의2(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) ①「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」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4조제2항제5호, 제4조의2제2항제5호, 제8조의2제1항,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(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제외한다)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(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, 7, 28.>
 -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금융소비자국, 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.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 7. 24., 2022. 12. 27.>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, 제27조제2항 · 제3항(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),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8. 3. 30.>

[본조신설 2017. 5. 8.]

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<신설 2021. 9. 7.>

- 제21조(평가대상 조직) ①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9. 7.]

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<신설 2015. 12. 30.>

제22조 삭제 <2024. 6. 25.>

- **제23조(기업구조개선과)** ①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에 기업구조개선과를 둔다. <개정 2016. 12. 27., 2018. 12.
 - 31., 2020. 12. 29., 2023. 10. 13., 2024. 10. 15.>
 - ② 기업구조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,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.
 -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 - 1.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
 - 2.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기업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
 - 4.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
 - 5. 업종별 신용위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6. 기업부실위험에 대한 조기대응에 관한 사항
- 7. 주채무계열 및 주채권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- 8. 주채무계열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
- 9. 기업구조조정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
- 10.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
- 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
- 12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・개정에 관한 사항
- 13.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・감독에 관한 사항
- ④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<개정 2018. 7. 24.>
-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 7. 24.>

[본조신설 2015. 12. 30.]

[제21조에서 이동 <2018. 7. 24.>]

- 제23조의2(가상자산과) ①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둔다.
 - ② 가상자산과에 과장 1명을 두며,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.
 -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 - 1.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
 - 2.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
 - 3. 가상자산사업자,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·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·감독
 - 4.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감독 검사 및 제재 조치
 - 5. 가상자산에 관한 외국 금융당국 · 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
 - 6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7.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
 - 8.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・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- 9.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통보ㆍ보고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
 - 10.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
 - 11.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
 - 12. 그 밖에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시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 - 13.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
 - 14.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・개정에 관한 사항
 - 15.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・감독에 관한 사항
 - ④ 가상자산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
 -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6. 25.]

[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<2024. 6. 25.>]

- 제23조의3(제도운영기획관 등) ①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을 두고,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검사과를 둔다. <개정 2023. 9. 15., 2024. 6. 25.>
 - ②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 - ③ 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 석원장을 보좌한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가상자산검사과에 과장 1명을 두며,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.
- ⑤ 가상자산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24, 6, 25.>
- 1.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리 ㆍ 감독에 관한 사항
- 2.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・갱신・말소에 관한 사항
- 3.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
- 4.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
- 5.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 검사 정책의 기획 총괄
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・연구
- 7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
- ⑥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
- ⑦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9. 17.]

[제23조의2에서 이동 <2024. 6. 25.>]

제24조(한시정원)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에 둔다. [전문개정 2024. 6. 25.]

부칙 <제35517호,2025. 5. 20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